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4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용민・박지원・주철현

임오경 • 한준호 • 민형배

문진석 · 장경태 · 전용기

김남희 · 임미애 · 황운하

김한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.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 및 제 50조의3 신설 등).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0조의2(전기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등) ① 전기이륜자동차의 소유 자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이륜자동차의 전기·전자장치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전기·전자장치 정기검사(이하 "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 - ③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방법, 검사항목, 검사의 대상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0조의3(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업무의 대행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

부령으로 정한다.

제84조제4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의2.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0조의2(전기이륜자동차의 정
	기검사 등) ① 전기이륜자동차
	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해
	당 이륜자동차의 전기・전자장
	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	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
	는 전기・전자장치 정기검사
	(이하 "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
	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이륜
	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
	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국
	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
	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	③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
	방법, 검사항목, 검사의 대상
	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
	<u>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50조의3(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
	사의 업무의 대행) ① 국토교
	통부장관은 전기이륜자동차정

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9. (생 략) <신 설>

20. ~ 24. (생략)

⑤ • ⑥ (생 략)

기	검사	업.	무를	द्वे	.율	적으	으로	수
행경	하기	위	하여	필	요	한	경우	-에
는	대통	긍려i	령으:	로	정	하는	<u>-</u> 전]문
기된	관에	を	[7] o	륜.	자분	동차	·정기]검
<u>사</u>	업무	-를	대항	하	게	할	수	있
<u>다.</u>								

② 제1항에 따른 전기이륜자동 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및 기 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4 -----

1. ~ 19. (현행과 같음)

19의2.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0. ~ 24. (현행과 같음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